

# 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 『청년희망키움통장』 특약

2. 변경 시행일 : 2019년 6월 17일

3. 기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(2019년 06월 17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며, 기존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)

4. 주요변경내용 : 약정기간, 우대금리 적용범위, 특별중도해지 적용금리 및 수수료우대 횡수변경

## 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1조 적용범위 ~ 제3조 예금과목 (생략) 제4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<u>손님은 36개월, 중앙자활센터 60개월</u> 로 합니다. 제5조 가입금액 ~ 제8조 해지방법 (생략) 제9조 우대금리 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<u>만기해지에 적용하며</u> ,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해지방법 (생략) 제11조 특별중도해지 “운영지침”에 따라 만기 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은행에 <u>해지 승인</u> 통보한 경우 <u>이 예금 가입일의 기본 금리를 적용</u> 합니다. 제12조 양도의 제한	제1조 적용범위 ~ 제3조 예금과목 (좌동) 제4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<u>손님은 60개월, 중앙자활센터 72개월</u> 로 합니다. 제5조 가입금액 ~ 제8조 해지방법 (좌동) 제 9 조 우대금리 ①~② (좌동) 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<u>만기해지•특별중도해지시에 적용하며</u> ,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해지방법 (좌동) 제11조 특별중도해지 “운영지침”에 따라 만기 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은행에 <u>특별중도해지 승인</u> 통보한 경우 <u>이 예금의 약정 금리를 적용</u> 합니다. 제12조 양도의 제한	약정기간 변경                    우대금리 적용범위변경                     특별중도해지 적용금리 변경

<p>(생략)</p> <p>제13조 부가서비스</p> <p><u>손님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,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<b>수수료를 매월 총10회씩 면제</b>합니다. 단,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<b>관계없이 매월 총합 10회씩 수수료를 면제</b>합니다.</u></p> <p>①전자금융(자동화기기, 폰뱅킹, 인터넷뱅킹, <u>모바일뱅킹</u>) 타행 이체거래</p> <p>②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</p> <p>제14조 기타</p> <p>(생략)</p>	<p>(좌동)</p> <p>제13조 부가서비스</p> <p><u>손님이 <b>본인명의 KEB하나은행</b>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,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<b>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</b>합니다. 단,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<b>관계없이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</b>합니다.</u></p> <p>①전자금융(자동화기기, 폰뱅킹, 인터넷뱅킹, <u>스마트폰뱅킹</u>) 타행 이체거래</p> <p>②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</p> <p>제14조 기타</p> <p>(좌동)</p>	<p>조건 명확화 용어변경 서비스횟수변경</p>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